

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8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2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1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12. 10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임시휴장기간 종료와 더불어 2002년 1월 개정 및 2003년 4월 신설된 입장료 등을 현실에 상응토록 조정 및 통합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“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” 주 개최지로서의 당항포관광지 위상제고

3. 주요내용

가. 수석전시관, 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징수 폐지 (안 제7조의2)

나. 고성군민 입장료 50% 감면 (안 제8조제1항)

다. 입장료, 자연사전시관, 수석전시관 관람료를 통합징수 (안 별표 1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시 휴장 기간 종료 후 재개장과 더불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지 볼거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주행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현행조례중 입장료, 자연사전시관 및 수석전시관의 관람료를 입장료로

통합하여 징수하고, 고성군민임을 입증하는자에 한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통합 및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

- 관광진흥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.
- 특히, 조례안 제7조의 2(전시관 등의 관람료)를 삭제하여 자연사전시관 및 수석전시관의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고 입장료에 통합하여 징수코자 함은 관광지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, 입장료가 어른, 청소년·군인, 어린이 간의 형평성과 금액의 적정성여부, 안 제8조 제1항 입장료 등의 면제 조항에 입장료 경감조항 단서신설 적정성여부, 시설이용료인 주차요금의 인상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8조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 고성군민임을 입증하는 자는 입장료에 한하여 이의 100분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데 입장객에 대한 고성군민 여부 확인 등 통제수단은?
- 답 : 고성군민이라 함은 고성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, 개인 또는 단체로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경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,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문 :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경감규정이 있는 조례가 있는가?
- 답 : 인근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용조례 제12조의 2에 입장료 할인 규정이 있습니다.
- 문 : 안 제8조의 제목 “입장료등의 면제 및 감면”과 동조 제1항 입장료 등의 면제조항에 입장료 경감조항 단서 신설은 내용상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안 제8조의 제목 “입장료등의 면제 및 감면”을 “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제2항을 신설하여 “군수는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

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”로 하고, [별표1] 개정안 입장요금표중 청소년과 군인개인에 대하여 “2,500원”을 “2,400원”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

● 답 :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

- 안 제8조의 제목 “입장료등의 면제 및 감면”을 “입장료등의 면제 및 경감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.
 - ② 군수는 고성군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- 안[별표1] 개정안 입장요금표중 청소년과 군인 개인에 대하여 “2,500원”을 “2,400원”으로 수정함.

8. 심사결과

- 2004. 12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

덧붙임 :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
수정안 1부